

의안번호	제 33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오영탁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19년 11월 26일

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(오영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3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11월 26일

발의자 : 오영탁, 이수완, 윤남진,
김기창, 연종석, 임영은

1. 제안이유

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‘공공기관’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
다.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라.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마. 공공기관 직원의 교육참석의무와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붙임

다. 협의 : 소방본부 대응예방과

라. 조례안 예고 : 2019. 11. 12. ~ 2019. 11. 19.(의회 홈페이지)

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·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소방훈련·교육) ① 공공기관의 장(이하 “기관장”이라 한다)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,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·화재통보·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5조(직원의 교육참석의무)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·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.

제6조(소방기자재 구매)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·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 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]

제24조(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·신체와 건축물·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,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,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, 책임 및 선임 등
2.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
3. 자위소방대의 구성, 운영 및 교육
4.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
5.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
[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]

제2조(적용 범위)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.

1. ~ 2. <생략>
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4. ~ 5. <생략>

제4조(기관장의 책임)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"기관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1. 소방시설,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·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소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3.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

제14조(소방훈련과 교육)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,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·화재통보·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의 사유서

○ 첨부제의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